

제 708 호

1979. 4. 2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진

편집장 : 문화공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 차 례

### ◎ 조 배

제 1323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324 호 :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325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개정조례.....	4
제 1326 호 :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	5
제 1327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의수거조례중 개정조례.....	6
제 1328 호 :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용토장수조례 개정조례.....	7

### ◎ 규 칙

제 1798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14
---------------------------------------	----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518

◎ 고 시

제 162 호 :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및시설 ( 도로 ) 결정  
지적승인..... 14

제 163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지적승인..... 15

제 164 호 :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  
업 ) 지적승인..... 16

제 165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지적승인..... 16

제 166 호 : 도시계획사업 ( 전기공급설비, 도로 ) 시행허가..... 17

제 167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도로 ) 일부변경지적승인..... 18

제 168 호 :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절점및지적승인..... 19

◎ 공 고

제 129 호 : 도시계획사업 ( 하수도및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21

제 130 호 :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  
사업 ) 및시설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22

제 131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26

제 132 호 : KS 표시점지처분해제공고 ..... 26

제 133 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 26

제 134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개설 ) 실시계획공람공고..... 27

◎ 사 령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도권청자문위원회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23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의조례중개정조례

제 3조에 제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차안분과위원회

제 4조 제 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동장 건설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1인이하, 지하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하, 차안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하로 각각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7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24 호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 1항중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및 제 8호를 각각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 10호 및 제 11호로 하고 제 3호를 세분하여 제 3호, 제 4호, 제 5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문학부문
- 4. 미술부문
- 5. 음악부문
- 6. 연예부문

제 6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항에 의한 추천자가 없거나 추천된자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심사하여 수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7조에 제 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수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재심물 요구받은 심사위원회는 다른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10조의 2중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및 제 8호를 각각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 10호 및 제 11호로 하고 제 3호를 새분하여 제 3호 제 4호, 제 5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학부문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과 그에 관한 번역동 문학분야

4. 미술부문 : 회화, 판화, 사진, 서예, 공예, 조각등 미술분야

5. 음악부문 : 국악, 양악등 음악분야

6. 연예부문 : 영화, 연극, 무용, 기타의 공연 및 음반 제작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25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근로자 후생시설 위탁경영관중

“서울특별시립 용산근로복지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상천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26 호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려와 조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상의종류 및 시상시기 ) ① 어린이상은 나라사랑부문, 효행부문, 예의부문, 예능부문 및 체육부문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상은 충의부문, 효행부문, 예의부문, 학예부문, 체육부문 및 과학기술부문으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상은 대상, 본상,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되, 대상은 1인,

본상은 각 부문별 1인 장려상은 각 부문별 3인이내로 한다.

③수상자에게는 상장이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 또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④시상은 매년 5월 5일(어린이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 수상자의요건 및 추천 ) ①수상후보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1년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자로 한다.

②어린이 상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로 하며, 청소년상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다만, 근로청소년은 20세이하)으로 한다.

③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 각급 지방행정기관장, 각급 사회단체 및 언론기관의 장 또는 지역주민 10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 4 조 ( 심사위원회 ) ①수상후보자들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제 2 조 제 1항의 각 부문별로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약간인을 위촉하고,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수당등) 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7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327 호

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및 진 료 비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1. 건강진단증 및 진단서 기타		1통	200 원
2. 먹는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먹는피임약 (21정 혹은 28정입) 큰 돔 (6개입)	1 싸이클 1 갑	100 원 100 원
3. 항결핵제 (2차약) 보급 수수료	가. 에담부롤 + 피라지나마이드 + 리팜피신	1인 1개월분	2,600 원
	나. 에담부롤 + 피라지나마이드 + 카나마이신	"	1,800 원
	다. 피라지나마이드 + 리팜피신 + 카나마이신	"	3,500 원
	라. 에담부롤 + 리팜피신 + 카나마이신	"	2,500 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마. 애담부틀 + 피라지나마이드		1개월분	1,000원
		바. 애담부틀 + 리팜피신		.	1,600원
		사. 리팜피신 + 피라지나마이드		.	2,600원
		아. 애담부틀		.	0원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7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p> <p>◎서울특별시조례 제 1328호</p> <p>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 사용료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p>			
		<p>울특별시 관리 운영하는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운동시설(이하 "운동장 시설"이라한다)에 관한 사용료의 징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허가) ①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 내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p> <p>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p> <p>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p>			

인정할 때

3. 기타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제 3 조 ( 사용시간 ) ①운동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 간 : 08:00 - 18:00 까지

야 간 : 19:00 - 23:00 까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 사용료의 금액 및 선납 )

①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5 와 같이한다.

②제 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일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제 5 조 (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 ( 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4 조의 전용사용료 대신에 관람료 수입 총액의 2 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 4 조의 전용사용료보다 적게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당일 또는 익일 12:00 까지 정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 6 조 ( 입장권 ) .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운동장시설내에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 라한다) 의 국경조동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 행사포함 ) 의 주최측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

3. 각급학교 교내체육대회 개최시의



<p>해당학교 학생</p> <p>4. 해당시설 관리책임자가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p> <p>②제 1항의 입장료는 50 원으로한다. 다만, 13 세 이하의 아동은 30 원으로 한다.</p> <p>③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할 수 있다.</p> <p>제 7 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또는 시의국경조동의 행사</li> <li>2. 기타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경기도함)</li> </ol> <p>제 8 조 (사용료의 반환) ①연습사용권, 입장권은 미 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②이미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 사용,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2 반환.</li> <li>2. 제 9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li> <li>3. 중계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에 대하여 전액</li> <li>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li> </ol> <p>제 9 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시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p>	<p>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li> <li>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li> <li>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li> <li>4.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li> </ol> <p>②시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동장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li> <li>2. 장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li> </ol> <p>제 10 조 (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등이 파손되거나 감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p> <p>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p> <p>제 12 조 (수수료등) ①이 조계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시설 사용허가신청할 때에는 200 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첨부, 납입하여야 한다.</p> <p>②사용허가 신청서류의 서식, 관람권의 구분 기타 이 조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계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lt;별표 1&gt;

## 기본전용사용료 ( 평일주간기준 )

( 단위 : 원 )

운동장별	체육경기	체육이외행사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44,000	216,000
장충체육관	22,000	108,000
서울육상장	48,000	144,000
효창육상장	18,000	116,000
야구장	22,000	144,000
정구장 (서울)	6,000	52,000
	9,000	52,000
배구장	6,000	34,000
수영장	55,000	58,000
아동수영장	12,500	22,000
스케이트장	48,000	
마술장	6,0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 : 평일의 3 할가산</li> <li>○ 야간사용료 : 해당주간사용료의 2 할가산 ( 단 실내체육관은 3 할가산 )</li> <li>○ 초과사용료 : 주간에는 주간사용료의 1 할가산 야간에는 야간사용료의 2.5 할가산 ( 초과사용기간이 30 분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 )</li> <li>○ 보조경기장 사용료 : 1실당본경기 기본전용 사용료의 2.5 할</li> </ul>	

< 별표 2 >		연 습 사 용 료		
운 동 장 별	기 준		요 금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개인	1인×2시간	2,000원	
	단체	1인×2시간	1,400원	
육 상 장	개인	1인×2시간	100원	
축 구 장	서 울	개인	1인×2시간	1,000원
		단체	"	700원
	효 창	개인	1인×2시간	500원
		단체	"	350원
야 구 장	개인	1인×2시간	1,000원	
	단체	"	700원	
정 구 장	1코트×2시간		1,500원	
배 구 장	"		1,000원	
탁 구 장	1탁구대×1시간		200원	
수영장	스케트장 1인×2시간		200원	
트 레 닝 센 터	개인	1인×2시간	200원	
	회원	1인×1개월	4,000원	
장 충 체 육 관	개인	1인×2시간	1,000원	
	단체	"	700원	
마 술 장	개인	1인×1시간	200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연습사용료는 기준금액의 1/2 포함.</li> <li>○ 단체는 동일팀소속 10인이상으로 함.</li> </ul>			

< 별표 3 >

중 제 방 송 로

( 단위 : 원 )

운동장별	구분	T V		라 디 오	
		국제경기	국내경기	국제경기	국내경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프로레슬링 프로권투	104,000	40,000	52,000	20,000
	농배구	52,000	14,000	26,000	7,000
	기타경기	14,000	4,000	7,000	2,000
	체육이외의행사	104,000	104,000	52,000	52,000
서울,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프로레슬링 프로권투	96,000	36,000	48,000	18,000
	아마권투	36,000	7,200	18,000	3,600
	농야구	48,000	12,000	24,000	6,000
	축구	72,000	12,000	36,000	6,000
	배구	24,000	6,000	12,000	3,000
	기타경기	12,000	2,400	6,000	1,200
	체육이외의행사	96,000	96,000	48,000	48,000

TV 녹화 : 운동장별 TV 중계방송로의 1/2

라디오녹음 : 운동장별 라디오중계방송로의 1/2

경기(행사)촬영 : 운동장별 TV 중계방송로와동일

구분		사용료 산출 기준		
1. 운동장시설을 사용한 영화촬영	종합	주간 : 100,000원		
	운동장	야간 : 150,000원		
	서울, 호	주간 : 50,000원		
	창, 잠중	야간 : 75,000원		
2. 애드벌룬 및 유	1개 1일 5,000원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 프로그램등의 복	판매부수 X 1부당가격 X 20 / 100			
4. 선전광고물 위한 부착제시, 전열, 전람	종합	부착제시	0.6m X 6m 이내	1년 : 240,000원
		운동장	60cm X 60cm X 10cm	5일 이내 : 40,000원
		전열	크기 1점당 또는	1일초과 : 4,000원
		전람	10cm당 36점	적가산
			이내	
	서울	부착제시	1m X 10m 이내	1년 : 300,000원
		호 창	1m X 1m X 10cm	5일 이내 : 50,000원
		잠 중	크기 1점당 또는	1일초과 : 5,000원
			10당 100점	적가산
			이내	
5. 기타물품판매대여	(매출금액 - 원가) X 판매수량 X 20 / 100			

<별표 5> 부속 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료 산출 기준	비고
라이타	기본료 (72,800원) + 실제 사용한 전기료	기본료선납
전기, 조명, 냉난방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의 고시가격 또는 관허요 금액에 의함.	수정액선납 후사후정산
확성기	1개 1일 : 4,000원	
숙박시설	1인 1일 : 1,000원	
	단체 (동일팀 소속 10인이상) 1인 1일 : 700원	

**규 칙**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9.4.24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서울특별시규칙제 1798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

제 3 조 제 17 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7)경찰국장은 치안 본과위원회를  
주관한다.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6 조 (치안분과위원회) ①치안분

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치안 질서확립을 위한 중요시  
책의 건의 및 자문
2. 도시 새마을 운동의 추진
3. 청소년 선도
4. 민·경 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찰행정의 개선

②간사는 경무과장, 서기는 기획감

사 제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  
업) 및 시설 (도로) 결정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 호 (79.  
4.2) 호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일  
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도  
로)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  
3.16) 의 현행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과의 운영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0.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도로) 결정지적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사업 (이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적승인								
마을명			위치			면적		비고
통일로주변 (구파발)			서대문구 진관외동 472 외 1			56,530 ㎡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노선명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중로 2류	15	54	대 1-12 (통일로)		진관내동 470-2		진입도로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 (78.3.25) 로 결정 고시된 도봉구 중계동 중로 2류 164 호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1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	160	중계동산 171-6일대	중계동 30-7	제한중고
변경	중로	2	164	15	300	•	• 산 30-1	진입로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64 호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  
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  
사업)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 호( '79. 4.2 )로 결정된 취락구조 개선사  
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위임 사  
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  
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적승인

마을명	위치	면적	비고
동산마을	강남구포이동 76-3 일대	43,515 평	
식유촌 1 마을	강남구우면동 483 일대	18,846	
식유촌 2 마을	강남구우면동 601-1 일대	22,152	
성촌, 형촌마을	강남구우면동 221-4 일대	68,225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65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 1. 당시 건설부 고시 제 138 호( '77 7.9 )로 재정비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공원)중 일부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사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  
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  
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

1979.4.24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조서					
번호	공원의종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근10-02	근린공원	방화공원	강서구	상화동	72,500㎡
근10-03	•	방화제2공원	강서구	방화동	180,000
근10-04	•	가양공원	강서구	가양동	113,900
근10-01	•	개화공원	강서구	개화동 방화동	386,500
근11-07	•	봉천제1공원	관악구	봉천동 사당동	422,150

  

별첨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66 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 도로)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63 호(78.12.16) 및 제 113 호(78.3.21)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전기공급설비, 도로)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에 의거 이불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 및 경기도 시흥군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4. 24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163, 164, 67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중구 남대문로 2 가 5 번지 한국전력(주) 김영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가. 착수 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1980. 3. 30 5)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별첨생략) 6) 공사실제도서 : 별첨(별첨생략) 7) 사업시행규모 : 전기공급설비(354 평) 도로(B=6m L=28.7m) 별첨도면표시와같음(도면생략).
---	--	--

◎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도로 )  
일부 변경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15 호  
( 77.11.29 ) 로 변경 결정된 월  
계동산 89-8 일대의 영광중 · 상업고  
등학교를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 77.3.16 )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  
인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9.4.24

서울특별시장

조서 1.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일부 변경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점	영광여자중 학교	도봉구 월계동 산 89-8 의 3 필지	15,970㎡ (4,831명)	
변경	"	도봉구 월계동 산 89-2 의 5 필지	26,483㎡ (8,011명)	3,180명 추가
기점	영광상업고등학교	도봉구 월계동 824-1 의 17 필지	31,137㎡ (9,419명)	정확한 면적 은 지적도면 의 지적선에 의함.
변경	"	도봉구 월계동 824-4 의 32 필지	56,989㎡ (17,239명)	

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일부 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점 변경	소로	2		8	200	월계 795-1	월계 824-4	폐지
기 점	소로	2		8	120	월계 산 53-3	월계 826	폐지
신 설	소로	2		8	180	월계 824-4	월계 826	

별첨 도면 ( 생략 )

◎ 서울특별시고시제 168 호 ( 77.3.16 )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결정 및 지적승인

2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1979.4.24  
서울특별시장

○ 결정표서

구분	시설명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하수도	3.0m	252 m	합정동 357-5	합정동 354-1	
"	"	4.0	840	성산동 271-36	망원동 438-16	
"	"	6.0	35	풍납동 155-26	풍납동 155-28	
"	"	"	385	풍납동 156-8	풍납동 237-4	
"	"	1.5	610	풍납동 220-17	풍납동 309-8	
"	"	1.2	290	성내동 9-3	천호동 408-3	
"	"	1.0	114	성내동 84-10	성내동 112-35	
"	"	"	52	성내동 87-10	성내동 112-35	
"	"	"	234	성내동 112-35	성내동 119-1	
"	"	"	145	성내동 232-10	성내동 225	
"	"	"	175	성내동 202-1	성내동 199-(다)	
"	"	0.5	50	등촌동 195	등촌동 196-9	
"	"	1.0	210	등촌동 191-101	등촌동 185-2	
"	"	1.2	110	등촌동 185-2	등촌동 185-17	
"	"	1.7	115	화곡동 203-6	화곡동 125-10	
"	"	1.2	10	화곡동 125-10	화곡동 125-11	

구분	시설명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 설	하수도	1.0 m	117.5 m	화곡동 125-11	화곡동산 128-4	
"	"	0.5	140	화곡동 362-3	화곡동 112-2	
"	"	0.7	570	화곡동 327-8	화곡동 261-6	
"	"	0.7	160	화곡동 327-50	화곡동 323-15	
"	"	1.2	170	신정동산 25	신정동 517-6	
"	"	1.4	120	신정동 517-6	신정동 530-2	
"	"	1.7	241	등촌동 112-4	등촌동 419-4	
"	"	1.4	180	등촌동 432-3	등촌동 411-3	
"	"	1.0	400	방화동 611-124	공항동 3-5	
"	"	1.0	71	내발산동 507	내발산동 503-1	
"	"	2.7	110	목동 404-2	목동 404-2	
"	"	2.7	650	신정동 119-1	신정동 130-88	
"	"	3~4.5	257	신정동 25-2(가)	신정동 283-2	
"	"	4.0	392.6	가리봉동 50-3	가리봉동 80-3	지적승인 포 합
"	"	3.5	106.2	가리봉동 80-3	가리봉동 152-7	"
"	"	3.0	295	가리봉동 152-7	가리봉동 145	"
"	"	1.7	50	가리봉동 145	가리봉동 143	"
"	"	2~3	96	석판동 46-65	석판동 58-82	
"	"	2~3	190	장위동 234-1	장위동 234-11	
"	"	4~5.75	115	정농동 967-83	정농동 281-2	
"	"	0.4	181	북아현동 156-37	북아현동 154-4	
"	"	0.7	74	홍제동 287-104	홍제동 287-50	
"	"	0.7	52.5	북아현동 1-251	북아현동 1-348	
"	"	0.5	48	연희동 231-3	연희동 69-3	
"	"	0.8	738	충정로 50	충정로 184-12	
"	"	0.7	146	충정로 120-26	충정로 134-1	

구분	시설명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 설	하수도	0.5 m	60 m	충정로 31-1	충정로 31-64	
"	"	0.7	105	남가좌동 5-221	남가좌동 5-207	
"	"	0.5	50	남가좌동 5-254	남가좌동 5-251	
"	"	0.5	150	북가좌동 115-9	북가좌동 116-7	
"	"	0.5	214	남가좌동 185-1	남가좌동 162-1	
"	"	0.5	120	남가좌동 124-45	남가좌동 124-77	
"	"	0.7	180	북가좌동 61-34	북가좌동 58-9	
"	"	0.7	93	북가좌동 72-3	북가좌동산 12-43	
"	"	0.7	60	북가좌동 133-1	북가좌동 83-3	
"	"	0.7	80	북가좌동산 4-10	북가좌동산 5-20	
"	"	0.8	366	현저동 102-24	현저동 102-2	
"	"	0.5	137	현저동 107-68	현저동 102-137	

별첨 도면표시와 갑음(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29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 및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89호(76.4.21)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이문동-취정동간 간선하수도 부가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갑음 한다.

1979.4.20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장의 위치

기점 : 동대문구취정동 155-39호

- 종점 : 동대문구이문동 176-14 호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및 도로)  
명칭 : 이문-휘경동간 간선하수도 공사
- 3. 사업의 규모  
알저 4 X 2.5 X 2 L= 90  
" 3 X 2.5 X 2 L=440  
" 2.5 X 2.5 X 2 L=320  
계 850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5. 사업착수 및 준공  
1979.4 ~ 1979.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 : 별첨토지조서
- 7. 토지조서 1부

◎서울특별시 공고제 130 호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3 호 (79.2.26) 로 시설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2 호 (79.3.30) 로 지적승인된 강남구압사동 275-2 일대 (양지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도로) 실시 : 구간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불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

- 고지 이에 공고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분지 할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공고로 갈음 함.
- 3.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새마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23

서울특별시

(공람개요)

- i. 사업장위치  
강남구압사동 275-2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양지마을 취락구조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시설 (도로) 공사
- 3. 사업규모  
o 도로개설공사 (L=514m, B=6m)  
o 단지조성공사 (A=37,560㎡)  
(11,362평)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천호출장소장
- 5. 작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79.3.2 ~ 79.6.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강남구 암사동	266-1	대	108 ㎡	강남구 암사동 266-1	김 관 태
"	266-2	"	364	강남구 암사동 266-2	양 원 식
"	266-5	전	6	강남구 암사동 276	양 경 석
"	266-7	대	110	강남구 암사동 266	차 인 완
"	267-2	"	181	강남구 암사동 265	양 한 영
"	267-3	전	299	강남구 암사동 266	양 찬 식
"	268-1	대	159	강남구 암사동 268	양 배 환
"	268-2	답	641	강남구 신사동 451-2	김 우 영
"	268-3	"	30	강남구 암사동 268	양 경 식
"	269	"	60	강남구 암사동 산 57	김 익 덕
"	269	"	42	강남구 암사동 산 57	김 익 덕
"	274-1	대	73	강남구 암사동 401	송 부 순
"	274-2	답	122	성동구 구의동 254-100	조 순 이 의 2 인
"	266-6	대	336	강남구 암사동 266	양 흥 식
"	275-1	"	152	강남구 암사동 275-1	오 창 섭
"	275-2	"	313	강남구 잠지동 208	황 윤 환
"	275-3	"	3	강남구 암사동 275	양 건 배
"	275-4	"	168	강남구 암사동 275-4	박 명 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강남구압사동	275-5	전	113㎡	강남구압사동 275-5	이옥분
"	275-6	대	95	" " 275	차계만
"	275-7	전	78	" " 268	양성규
"	275-8	대	28	" " 528-10	윤수용
"	275-9	"	79	" " 275-9	하갑선
"	275-10	"	230	동대문구답십터	이계숙
"	259-2	전	48	관악구신림동 409-79	임성희
"	264-2	대	53	강남구압사동 264-2	권오성
"	264-3	"	97	" " 264-3	김종운외 1인
"	264-4	임	11	관악구혹석동 48-60	이문재
"	"	"	599	"	"
"	264-5	"	91	강남구압사동 294	윤호림
"	11-6	대	30	" " 시영아파트28-105	조동락
"	"	"	79	"	"
"	11-8	"	137	강남구압사동 264	차급환
"	11-9	"	171	성북구동소문동 6가7-1	정두영
"	11-10	"	121	강남구압사동 264	최재설
"	11-11	"	2	" 264-11	조수
"	11-13	"	92	" 264	이재운
"	11-14	"	16	" 264-14	윤홍운
"	11-15	임	5	" 264	황우진
"	11-17	"	10	" 264-17	조성한
"	265-1	대	100	" 265-1	차총환
"	"	"	6	"	"
"	"	"	1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강남구압사동	265-3	대	15㎡	강남구압사동 265-3	백아음전
"	"	"	60	"	"
"	275-12	"	30	" 275-1	오창섭
"	276-1	"	1	" 276	양한태
"	"	"	18	"	"
"	"	"	229	"	"
"	276-2	"	126	"	차용천
"	277-4	임	210	서대문구대조동 220-5	김제근외 4인
"	293-2	대	80	종로구청전동 180	김희태
"	293-4	"	122	강남구압사동 293	차재홍
"	293-8	"	104	" 296	차규홍
"	293-7	"	214	성북구청농동 192-171	최경후
"	294-1	"	123	강남구압사동 294	윤호림
"	294-2	"	37	" 438	이장수외 3인
"	295	"	34	도봉구미아동 837	조남한
"	296-3	전	76	강남구천호동 401-6	송복순
"	247-2	답	138	중구율지로 5가 125	박승서
"	248	"	203	종로구삼청동 79-7	이태근
"	245	"	408	강남구압사동 265-3	백아음전
"	249	"	159	" 293	박천태
"	280-1	도로	37	서울특별시	
"	"	"	5	"	
"	"	"	19	"	
총필지	66 필지		7,907 평방미터		
사유지	63 필지		7,846 "		
선유지	3 필지		61 "		

◎ 서울특별시공고제 131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 1.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있어,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14 일간 일란의 공람에 공한다.
-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 송달할 것이나 미수영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 3. 환지계획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

서울특별시장

\* 변경내역 \*

- 가. 사업명 :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반포동산 75 의 7
  - 서초동 1102-1
  - 서초동 390-1, 2 일대
- 다. 변경면적 : 33,121.80 평

◎ 서울특별시공고제 132 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에 의거 KS 표시 정지처분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불 공고한다.

1979.4.24

서울특별시장

- 1. 허가번호 : 1039
- 2. 허가일자 : 75.2.18
- 3. 제조업체명 : 한영프라스틱 (株)
- 4. 대표자 : 양 춘 근
- 5. 소재지 : 도봉구창동 623-8
- 6. 규격번호 : KSM 3402
- 7. 품명 :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소켓)
- 8. 처분일자 : 79.1.20
- 9. 해제일자 : 79.4.23

◎ 서울특별시공고제 133 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 정지처분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동 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79.4

서울특별시

- 1. 허가번호 : 224 \*
- 2. 허가일자 : 1966.9.27
- 3. 업체명 : 삼화육판교구 교제사
- 4. 대표자 : 김 명 일
- 5. 소재지 : 관악구대방동 417-1
- 6. 품명및규격 : 칠판 ( KSG 2002 )
- 7. 처분일 : 78.9.15
- 8. 해제일 : 79.4.18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4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개설 )  
 실시계획공람공고

-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 62.12.8 ) 로 고시된 중앙시장-청계천간 도로 개설공사구간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의 일반의 공람에 공고하고자 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 3. 관계도서는 중구청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4.

서울특별시

( 공 랑 개 요 )

- 1. 사업장위치 : 황학동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중앙시장-청계천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규모 : 폭=15 연장=310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중구청장 )
- 5. 착수및산공예정일 : 79.4-79.6.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와 성명 : 별첨

사 령

발령 제 133 호

성 명	발 령 사 랑			비 고
	원 부 서	호 봉	직 급	
김 동 배	법 무 담 당 관 실	3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신 규
이 광 석	시정개발담당관실	3	"	"
김 관 호	새 마 울 지 도 과	2	"	"
최 기 명	새 마 울 사 업 과	3	"	"
우 욱 진	사 회 과	3	"	"
허 승	청 소 2 과	2	"	"
우 정 훈	민 방 위 과	3	"	"
김 명 찬	운 영 과	3	"	"
손 진 하	주 택 관 리 과	3	"	"
노 병 주	주 택 개 량 과	3	"	"
이 세 용	운 수 행 정 과	3	"	"
김 기 출	하 수 행 정 과	3	"	"
한 상 민	업 무 과	3	"	"
안 윤 미	시 민 과	1	"	"

197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